

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및 협의 방법

1.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

가.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합니다.

나. 가목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순위 및 방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
2. 보상금 수급자 지정 방법
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 등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지정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지정서 작성

신청인



접수

관할 보훈(지)청
제주특별자치도

기록 정리

관할 보훈(지)청
제주특별자치도

확인

담당

주무

과장

(지)청장